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58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7. 13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7. 13

다. 상 정· 의 결 일 자 : 1999. 7. 21 총무위원회 상정· 의결

2. 개정이유

0 기구명칭변경과 기능 조정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2단계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를 정비함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0 기구명칭 변경(안 제3조)

- 기획감사실 → 부군수 직속으로 편제
- 행 정 과 → 자치행정과로 명칭변경
- 지역협력과 → 문화관광과로 명칭변경
- 세무회계과 → 재무과로 명칭변경
- 경제통상과 → 지역경제과로 명칭변경

0 기능 조정(안 제3조 및 안 제6조)

- 기획감사실 홍보기능 → 문화관광과로 이관
- 행정과 병무, 주민등록· 호적기능 → 민원봉사과로 이관
- 행정과 청소년 업무 → 사회복지과로 이관
- 민원봉사과 120민원기동대 업무 → 자치행정과로 이관
- 사회복지과 위생기능 → 보건소로 이관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0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를 구현키 위하여 기구의 명칭변경과 기능 조정으로 생산적인 조직개편을 위한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안으로

0 기능쇠퇴 분야 및 유사중복 기능 등은 정비하고 행정수요 증가 부문은 보강하므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0 1999. 7.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